

정 관

사단법인 지식콘텐츠기업협회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지식콘텐츠기업협회” (이하 “협회” 라 한다)라 하고 영문명칭은 “The Association of Knowledge Contents Companies” (약칭은 “KCC“한다)라고 한다.

제2조(목적) ① 협회는 교육훈련 콘텐츠 개발 및 운영 관련 기업들의 사업주 단체로 회원사 간의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해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콘텐츠와 학습경험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국가 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협회는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학습 및 직업능력개발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훈련 콘텐츠 제작 및 관련 산업의 직업능력개발

가. 교육훈련 콘텐츠 제작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나. 교육훈련 콘텐츠 제작 및 관련 산업에 취업 하려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다. 관련 분야 종사자 및 구직희망자의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성 및 경력정보제공

라. 관련분야 전문 인력의 창업 및 취업지원, 유·무료직업소개소의 운영 등

2. 회원사와 관련 기업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사업

가.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교육훈련시설의

설립 및 운영

- 나. 인적자원개발,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연구 및 관련 컨설팅
 - 다. 인적자원개발,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공동 조사연구
 - 라. 사업 관련 정보의 공유, 공동마케팅, 컨소시엄 구성 등 회원사의 사업 지원
 - 마. 교수학습체계개발, 이러닝 콘텐츠 및 솔루션 개발, 기술표준화 관련 연구와 지원
 - 바. 전문자격부여, 콘텐츠, 솔루션 평가인증, 우수기업 및 개인 시상
3. 취약계층의 채용 및 일자리 알선,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서비스의 제공 등 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4. 우호증진 및 교류협력 활성화
- 가. 정례회의, 연찬회, 공동연수 등 회원사간 교류활성화 및 우호증진 활동
 - 나. 포럼, 세미나, 인적자원정보 공유, 공동연구 등 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의 네트워크 구축
 - 다. 해외 선진 인적자원개발 기관과의 교류 및 연수
 - 라. 지식학습, 업계현황 관련 정기 간행물 및 도서출판
5.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① 협회는 제4조의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협회의 목적과 창립취지에 다르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을 제외한 수익사업을 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가입) 협회의 회원이 되려면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정해진 가입 절차를 거친 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원의 구성 및 자격)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일반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원별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 직업능력개발 및 인적자원개발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및 단체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
 - 가. 교육훈련 콘텐츠의 설계(Design) 및 제작(Development)기업
 - 나. 교수학습체계 개발 및 운영기업, 교육훈련 내용의 창작 및 개발기업
 - 다. 교수학습관리,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솔루션제공 및 매체전달기술 개발기업
 - 라. 인적자원개발, 콘텐츠개발관련 연구 및 컨설팅을 수행하는 기업
 - 마.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2. 준회원 : 인적자원개발 관련 단체 및 개인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가. 교육훈련 개발 관련 사업주단체, 협회, 학회 등
 - 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전문가, 기업, 단체의 해당업무 담당자
 - 다. 정회원 중에서 해당연도 회비를 미납한 자
3. 특별회원 : 관련 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 또는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헌을 한 개인 및 단체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한 자(특별회원은 정회원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며, 이사회, 분과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4. 일반회원 : 협회 설립목적 및 사업에 부합하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해당분야 취업예정자

제8조(회비) ① 협회의 회비는 연회비로 한다.

- ② 정회원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③ 특별회원은 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 ④ 총회 또는 이사회는 회비를 변경할 수 있다.
- ⑤ 연회비의 납부 시기는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이며, 정회원은 협회에서 지정한 통장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⑥ 신입회원은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은 회비 기준에 따라 가입한 달부터 해당 연도 12월까지 월할 계산하여 정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협회의 설립 목적에 따른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및 의무
2.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 참석, 의견 제안, 의결권(다만, 선거권과 결권은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과 특별회원에게만 부여한다)
3. 협회의 정관, 내규, 그 밖의 관련 규정의 준수 의무
4.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의무
5. 협회의 자료, 출판물 제공 받을 권리 및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 열람 권리
6.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이행의 의무

제10조(자격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자격이 상실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2.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거나 그 밖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회원의 탈퇴) 협회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입회비, 회비 등은 반환받을 수 없다.

제12조(회원의 상벌) ①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3조(임원의 구성)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인, 회장을 포함한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 감사 1인을 둔다.
- ② 근로자대표 1인 이상을 반드시 이사로 선임하며 서비스수혜자 또는 관련단체나 연계기업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이사로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 및 정회원의 추천자, 근로자대표 1인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② 임원의 선임을 위한 총회는 전임 임원의 임기 만료 30일 이전에 소집되어야 하며, 의결정족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③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임원의 임명 등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장이 정한다.

제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6조(상임이사) ① 협회는 목적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② 상임이사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업무의 계속성) 임원은 천재지변 등으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차기 임원 선출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임원은 대리인에게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이사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그 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사회 참석
2. 협회의 재산현황에 대한 감사
3.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
4.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일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5. 제4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한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 요구
6. 재산현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 진술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1조(회장 직무대행) ① 회장이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상임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4장 총회

제22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제23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필요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 개최일의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각 회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24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3분의 1 이상이 서명하여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참석이사 중 연장자가 의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2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회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은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의결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7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자신의 임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 중에서 의장 또는 정회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8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나 결원이 된 경우에는 후임 회장을 선임할 때까지 상임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차기 임원의 추천 및 보궐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
4. 회비의 결정 및 납부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
6. 정관 및 주요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의 증감 및 처리에 관한 사항
8. 지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9.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10. 총회 의결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1조(이사회 의 구분과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 감사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 개최일의 7일 전까지 회의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이사 및 감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장이 긴급한 사항이라고 판단한 때에는 회의 개최일의 전일까지 알리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6장 조직

제32조(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① 협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33조(위원회) ① 협회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분야별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전문가의 자문과 산업·학교·연구소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고문단과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34조(연구소) 협회는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35조(지부의 설치) 협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독립적인 형태의 지부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6조(재산의 구분)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 또는 양도를 받거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정한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37조(재산의 관리) ①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차입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권리를 포기할 경우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가 매입, 기부채납 등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는 지체 없이 이를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제38조(수입금) ① 협회의 운영재원은 회비, 후원금, 출연금, 차입금, 용역수입, 사업수입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39조(회계연도, 출자 및 용자) ①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② 협회는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의결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용자를 받을 수 있다.

제40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임원은 상근임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예산편성 등)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42조(감사) 회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이월손실을 보전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4조(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① 협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하고,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46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2017년 2월 9일 개정의결(고용노동부 허가 2017년 8월 17일)
- 2020년 7월 16일 개정의결